

|  |   |               |     |      |
|--|---|---------------|-----|------|
| 제 호<br><br><h2 style="margin: 0;">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h2>  |   |               |     |      |
| 허가 구분  | <input type="checkbox"/> 자력 포획 <input type="checkbox"/> 대리포획 <input type="checkbox"/> 수확기피해방지 |               |     |      |
| 허가받은 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 허가사항   | 기 간   | . . . ~ . . . |     |      |
|  | 방법 및 도구   |               |     |      |
|  | 지 역   |               |     |      |
|  | 종 류   |               | 수 량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10px; color: red; font-weight: bold;">직인</span> |   |               |     |      |

준수사항

1.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방법 등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포획한 동물은 즉시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붙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포획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